

배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1.02.25. 규정 제1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배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의 나눔네트워크 사업이 지역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배분기준 수립 및 배분사업계획 심의 등에 관한 사항
2.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
3.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
4.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경기도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남양주배분분과소위원회의 기능을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~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재단 복지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
2. 유관기관·단체의 인사
3. 시 관계 공무원
4. 시민대표
5.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

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나눔사업 부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3. 제6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4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.

1.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
 2. 배분 관련 필요성이 있는 경우
 3. 지원사업에 심의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
 4. 기타 긴급지원 사업이 필요한 경우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심의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재단에 보존한다.

제11조(위임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배분심의위원회 위촉수락서

☐ 성 명 :

☐ 생년월일 :

☐ 주 소 :

위 본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
남양주시복지재단의 배분심의위원으로 위촉됨을 수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수 락 인 : (인)

재 단 법 인 남 양 주 시 복 지 재 단 대 표 이 사 귀 하

제 호

위 축 장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귀하를 2021년도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
배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20 년 월 일

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

